

전기사고 소송판례 ④



도급공사중 감전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 휴전시행 소홀로 인한 사고

가. 사고개요

'72. 2. 27. 09:10경 구로구 운수동 소재 기제공단내에 설치된 22.9kV-Y 오류간선94우 좌 2호선 수리 도급공사중 ○○○(남20 도급전공)이 자가발전 수용가로부터 역류된 역전류에 감전 부상

나. 판결요지

자가발전 수용가로부터 역류하는 전류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COS를 개방하여 역류전류를 막아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75. 3. 11 대법판결 74다 2232호로 확정된 '74. 11. 15 서울고법 74나1270호)

다. 판결이유

「본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오류간 27호선의 연결 스위치를 개방하여 송전되어 오는 전류를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고 위 27호선과 오류간

선 94호선 사이에는 일반 수용가에 연결되는 전선이 있어 위 전류차단중 자가발전 수용가로부터 역류하는 전류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위 94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전류차단스위치(C.O.S)를 개방하여 교류 전류를 막아야 하고... 본건 공사중 전류를 차단해줄 책임이 있는 피고회사의 현장감독인 소외 홍길동은 이와 같은 짧은 시간내에 전류가 모두 차단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작업에 중사토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이를 작업원들에게 주지시켜 본건 공사전 ○○전업의 현장조장인 소외 ○○○과의 사이에 본건 공사당일 09:00경 위 27호선에서 만나 연결스위치를 함께 개방하기로 하는 약속만을 하였으며 위 약속에 따라 공사당일 아침 위 연결스위치를 개방한 후에야 위 ○○○에게 위 94호선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C. O. S를 개방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접지 작업을 하라는 거의 실현하기 어려운 지시만 내린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홍길동, ○○○ 그리고 위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홍길동 사용자인 피고회사로서 홍길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관련법

민756(사용자의 책임)

2. 잠바 연결 휴전작업중 송전으로 인한 사고

가. 사고개요

'70. 10. 11. 16:17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000에 있는 전주 1본의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00전업사 소속 000(남27 도급전공)가 휴전작업으로 잠바 연결을 하던 중 00출장소 직원이 송전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감전 부상

나. 판결요지

휴전작업중 송전조치로 감전부상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72. 1. 20. 서울고법 판결 71나 1745호로 확정된 '71. 7. 13. 서울지법 판결 71가합 12).

다. 판결이유

원고 000은 속초시 동명동 소재 00전업사의 외선 전공으로서 같은 00전업사는 피고 산하 00지점 00영업소 00출장소장으로 부터 양양군 양양면 00리에 있는 한전 배전 제 25호 전주 1본의 교체공사 청부를 받아 원고 000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 되어 동인은 그곳부터 약 500m 떨어진 위 출장소 직원과 사전에 '70. 10. 11. 16시부터 10분간 위 공사를 위한 단전조치를 하기로 하고 그 공사 종료 통지를 받은 후에 송전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나 그 날 16시 2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전주상의 절단된 잠바연결 작업중 시간이 지연되어 그날 16:17경 같은 출장소 배전전공으로 있는 소외 홍길동이 전기수용가로부터 송전독촉을 받고 위

공사의 종료여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고 위 출장소 사무실에 있는 3.3kV 고압 리크로사에 부착된 조작봉(스위치)를 올려서 송전조치한 과실로 위 고압전류가 공사중이던 위 전주선상에 통전하여 원고 000로 하여금 그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중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따라서 위 사고는 피고 산하 위 출장소 직원이 그 송전조치함에 있어 위 작업 종료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라. 관련법

민756(사용자의 책임)

3. 주상변압기 캐치 투입중 송전으로 인한 사고

가. 사고개요

'71. 4. 30. 18:00경 경남 울산시 성암동 00부락 고압선 가설공사의 현장에서 000(남45. 도급전공)가 주상변압기 캐치를 투입하다가 그 순간 송전된 3.3kV 고압전류에 감전 부상

나. 판결요지

휴전작업중 송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있다('72. 9. 13 서울고법 판결 72나 383호로 확정된 '72. 9. 9 서울지법 판결 71가합 5298호).

다. 판결이유

「피고 산하 부산지점 울산영업소 00계 직원인 소외 홍길동은 '74. 4. 30 00전기 합자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울산시 성암동 00부락 고압선 가설공사의 현장에서 그 공사 진행관계 및 송전관계를 감독하고 있었던 중 위

공사 현장에서 캐치(변압기와 일반가정선 사이를 연결하는 퓨우즈)를 달으라는 작업지시를 하여 원고 ○○○ 및 소외 ○○○이가 각 캐치 1개씩을 들고 위 같은 동사무소 앞 소재 높이 11m의 변대주(변압기가 달린 전주)에 승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고압선 송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홍길동으로서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3.3kV 고압전선에 가압송전작업을 위하여 송전소에 가기전에 캐치 투입작업을 마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현장을 떠나 송전소로 가서 송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등이 캐치투입 작업을 위하여 승주하고 있을 때 위 현장을 떠나 택시로 그곳에서 1.5km 떨어진 송전소에 이르러 위 캐치 투입작업이 끝났으리라고 가볍게 믿고 송전조치를 탓으로 매마침 캐치 투입작업중의 진동으로 떨어진 C. O. S (3.3kV 고압선과 변압기 사이의 퓨우즈 개폐기) 퓨우즈봉을 원상대로 끼워두기 위하여 COS 퓨우즈를 손으로 집어 넣고 있던 위 원고로 하여금 3,000V 전기에 감전되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위 원고에게 우전박 절단 및 좌수기능 완전상실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 소속직원인 홍길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위 홍길동의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불심양면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관련법

민756(사용자의 책임)

4. 주상 변압기 상단과 C. O. S 사이의 사고

가. 사고개요

'72. 3. 9. 09:30경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리 ○○○에서 위부인 ○○○(남23 도급전공)

가 변압기를 내리기 위하여 수진리간 251호 전주의 변압기 위에 올라가서 걸이개를 앵글에 걸고 그 걸이개에 도르래를 연결하려다가 우측 어깨 부위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22.9kV - Y 인하선에 접근 감전 부상

나. 판결요지

고압전주의 변압기 상단과 COS 사이의 간격이 보통사람 키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간격이 1m 정도인 것은 전주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인한 배상책임이 있다(73. 12. 31 대법판결 73다 6171호 확정된 '73. 2. 13 서울지법 판결 72가합 3768호).

다. 판결이유

이 사건 사고당시 변압기를 들어 올리기 위해 연결 하려던 위 걸이개와 도르래의 길이가 약 120cm정도 되었으므로 변압기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 위하여는 걸이개를 변압기상단에서부터 적어도 위로 120cm이상 되는 곳에 걸어야 하는데 사고전주는 변압기 상단에서 고압전류가 통하는 위「스위치」있는 곳까지가 불과 107cm로 다른 전주에 비해 그 길이가 특별히 짧아서 원고 ○○○가 변압기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었던 상황인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첫째 변압기 양체 공사를 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는 고압전주의 변압기 상단과 COS 사이의 간격이 보통사람의 키 이상이어야 하는데(이 사건 사고 발행 후인 '72. 5. 4 만들어진 배전선 설계기준에 의하면 그 간격 180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고 전주에 위 간격은 1m 정도로서 이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격을 두지 아니한 전주를 설치 보존해 온 피고 한전의 잘못과...

따라서 피고 한전은 공작물인 사고전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라. 관련법

민 758(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5. 전주 밑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 사망

가. 사고개요

'76. 6. 7. 15:20경 서울 송파구 ○○동 잠실아파트 1단지 68동 앞에서 외부인 ○○○(남27, 도급전공)이 승주 작업중 동 전주밑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 사망

나. 판결요지

전주 밑 부분 도괴로 인한 배상책임 있다('76. 12. 8 서울지법판결 76가합 2276호)

다. 판결이유

위 전주는 이전하여 문기전에 이미 밑 부분에 균열이 생겼으며 내부의 철근 수개가 부러져 있었던 바 피고로서는 위 전주시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주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인 전주가 새 전주가 아니므로 이를 점검하여 절단의 위험이 있으면 전주를 교체하는 등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더우기 위공사시 위 공사가 피고의 요구대로 또한 단전시간 내에 시행완료되는가를 확인 감독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소속 소외 홍길동이 현장에 나와 있었으므로 동인으로서도 위에 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공작물인 전주의 소유자로서 또한 위 홍길동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위 ○○○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관련법

민758(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6. 전주 발판못이 빠져 추락 부상

가. 사고개요

'70. 7. 29. 20:00경 서울 성북구 ○○○동

606에서 외부인 ○○○(남22 도급전공)가 전주에서 내려오다가 발판못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 부상

나. 판결요지

불완전한 상태로 있던 발판못이 빠져 입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 있다(74. 4. 23 대법판결 74다 98호 확정된 74. 6. 27 서울지법판결 72가합 6805호).

다. 판결이유

원고○○○가 그 판시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끝마치고 허리에 맨 안전 벨트를 끈채로 전주에 박혀 있는 발판못을 손으로 잡고 발판에 타고 있던 가제로 전주목을 찍으면서 위 전주를 내려 오다가 지상 3.5m 상부의 위 전주 중간부분에 걸쳐서 가설되어 있던 전화선에 원발의 가제가 얽히게 되자 이를 뿌리쳐 풀기 위하여 지상 5.5m 가량의 전주 상단부에 박혀진 발판못을 잡고 있던 왼손에 힘을 주는 순간 이 발판못이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여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상 대법판결) 전주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목주에 발판못은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중량을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깊게 박아서 험사리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발판못이 박힌 목주부분이 낡아서 못이 흔들려 나올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교체하거나 안전하게 보수하는 등 제반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 관리행위를 소홀히 하고 위 시설을 방치한 탓으로 위 전주에 불완전한 상태로 박혀 있던 발판못이 원고 ○○○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여 빠지게 된 결과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인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이상 서울지법판결).

라. 관련법

민 758(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